

별첨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분류표

구분	시설의 상태	비고
양호	조치가 필요 없는 최상의 상태이거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고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조치이행계획서 및 이행실적 (보수/보강 등) 제출 필요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첨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법 제55조제4항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법 제34조의4제4항등 관련법령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안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